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10. 5.(수)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00
제출일자	2022. 9. 23.
회부일자	2022. 9. 28.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경상북도지사

2. 제안이유

- 2023 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연번	출자·출연기관	주요사업	출연 예정액	비고
계	4개 기관	4개 사업	4,893,615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개발사업 학술행사 및 간행물 발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50,000	정책기획관
2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 인건비 연구사업비 연구원 경상경비	4,300,000	
3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컨설팅 및 정책연구 공기업 임직원 교육	66,000	예산담당관
4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연구과제 및 용역 수행 세무공무원 교육 등	277,615	세정담당관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4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써 여기에서는 출연 여부만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출연금액은 앞으로 있을 2023년도 예산심사를 통해 확정됨을 말씀드립니다.
-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 사업비, 학술행사, 간행물 발간, 인건비 등 기관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가 각각 250백만원(세종특별자치시 150백원)을 부담하여 출연하는 것이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둘째,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제3조에 따라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경비 등 기관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제3조(출연금) 도 및 시·군은 제2조의 기금 및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대구경북연구원의 분리[대구경북연구원 해산 및 (가칭)경북연구원 설립]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해산에 따른 출연금 회수 및 진행중인 연구에 대한 출연금 정산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셋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컨설팅, 정책연구, 공기업 임직원 교육 등 기관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 재정력 지수와 공기업의 수를 기준으로 부담하여 출연하는 것이고,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북도 재정력 지수(0.489) 24백만원 + 공기업 수(39개) 42백만원 = 66백만원

-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연구과제 용역 수행, 세무공무원 교육 등 기관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23년 출연금 : 2조 3,135억원 × 1.2/10,000 ≒ 277,615천원

- '21년 도세 세입결산액 2조 7,654억원 중 보통세 2조 3,135억원

- 자치단체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따라서, 기획조정실 소관 4개 기관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연구사업비, 경상 경비 등 기관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출연기관	출 연 금 사용목적	출 연 금 액				비 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4개 기관		4,327,660	4,828,960	4,869,565	4,893,615	
1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기관운영 지 원	250,000	250,000	250,000	250,000	정 책 기획관
2	대구경북 연구원	기관운영 지 원	3,800,000	4,300,000	4,300,000	4,300,000	
3	지방공기업 평가원	기관운영 지 원	72,000	72,000	66,000	66,000	예 산 담당관
4	한국지방세 연구원	기관운영 지 원	205,660	206,960	253,565	277,615	세 정 담당관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023년도 출연금 현황(4개기관_총괄)

(단위 : 백만원)

출연기관명	'22년 출연금	'23년 예정액	출연근거	산출근거	시군 출연	출연성과
4개 기관	4,870	4,89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0	25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제3조제3항	연구인력인건비 189 연구사업비 40 일반운영비 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 10건('13~'22년) • 정책이슈리포트 6건('17~'22년)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대구경북연구원	4,300	4,300	경상북도 대구경북 연구원 육성 조례 제3조	인건비 3,500 연구사업비 600 경상경비 2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도 정책연구사업 수행 - '21년 : 경 북 도 58건 시도공통 29건 - '22년 8월 : 경 북 도 47건 시도공통 20건 • 주요성과 - 경상북도(구미) 모바일특구 기획 및 유치 - 구미권·포항권 산단대개조 지정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및 추가단지(경주구미) 지정 - 대구경북 와이드밴드갭 반도체 생태계 조성 -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및 관련 기관 유치 - 경상북도 스마트 수산양식 구축방향 -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지방공기업평가원	66	66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제3항	공기업수(50%)+ 재정력지수(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컨설팅 8건, 교육연수 15,167명 • 2021년 컨설팅 1건, 교육연수13,903명
한국지방세연구원	254	278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 징수액의 1.2/1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연구과제 무료 수행 : 2건 - 용역비 2천만원 절감 • 지방세제도개선 토론회 및 워크숍 공동개최 • 지방세 법령정보 제공 - 57,600건 지방세 최신판례 등 제공 •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 지방세불복사건 대응 논리 발굴 등

증감 사유

(단위: 백만원)

연번	출연기관명	'23년 예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1	한국지방세연구원	278	24	- 보통세 세입결산액 2,004억원 증가 * (주요 증가 세목) 지방소비세 658억원, 취득세 1,231억원 증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근거, 지원현황

□ 지원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	부처 지원액	시·도 출연액	비고
2022	7,204	3,054 (행안부)	4,150 (17개)	16개시·도 각 250, 세종 150
2021	7,204	3,054 (행안부)	4,150 (17개)	16개시·도 각 250, 세종 150
2020	7,204	3,054 (행안부)	4,150 (17개)	16개시·도 각 250, 세종 150
2019	7,204	3,054 (행안부)	4,150 (17개)	16개시·도 각 250, 세종 150
2018	5,829	2,529 (행안부)	3,300 (17개)	16개시·도 각 200, 세종 100
2017	6,100	2,800 (행자부)	3,300 (17개)	16개시·도 각 200, 세종 100
2016	5,300	2,800 (행자부)	2,500 (17개)	16개시·도 각 150, 세종 100
2015	5,406	2,106 (행자부)	3,300 (16개)	15개시·도 각 200, 서울 100
2014	3,940	2,340 (안행부)	1,600 (15개)	15개시·도 각 100
2013	3,340	2,340 (안행부)	1,000 (15개)	14개시·도 각 67, 제주 62
2012	2,340	2,340 (행안부)		
2007~2011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개정(2011.3.)			
1999~2006	•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혁신 방침에 따라 시·도 출연 중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개정(2006.2.)으로 국가예산 지원근거 마련			
1984~1998	37,698	-	37,698 (15개)	우리도 2,957백만원(약 8%)

□ 연구원의 지자체 사업 지원 계획

- ▶ **방 향**
 - 정책연구 및 이슈리포트 등의 연구 성과물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적극적 공유
 - 지방의회의 지역발전 및 사회적 혁신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 **방 안**
 - 연구품질을 강화를 위한 실효성 확보, 시도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성 확보
 - 지역현안 과제 발굴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정책대안 지원
- ▶ **주요사업**
 - 시·도 정책연구과제 및 정책이슈리포트 수행, 지방의정 아카데미 등 지방의정 지원사업
 -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정책제안·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등 아이디어 공유 채널 운영

□ 경상북도 과제 추진 현황

【 '13년부터 '22년 현재까지 정책연구과제 16건 (정책연구 10건, 정책이슈리포트 6건)】

연도	구분	연구과제명	비고
2013	정책연구	· 과태료 부과·징수제도 개선방안	세정담당관
2014	정책연구	· 경북형 경로당 활성화 방안	노인효복지과
2015	정책연구	· 2015년도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검증	민생경제교통과
2016	정책연구	· 경북 안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안전정책과
2017	정책연구	· 스마트 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방안 · 경상북도 열린혁신 추진계획 수립	일자리경제교통단 정책기획관
	정책이슈리포트	· 경상북도 청년기금 설치 검토	일자리경제교통단
2018	정책연구	· 공익활동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새마을봉사과
	정책이슈리포트	· 경북형 청년 귀촌 모델 구축 및 공모사업 추진 방향	미래전략기획단
2019	정책이슈리포트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북형 자치경찰 모델 구상	정책기획관
2020	정책연구	· 전국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건립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 (12.15.까지, 수행중)	인구정책과
	정책이슈리포트	· 경상북도 신혼부부 주거실태 분석	건축디자인과
2021	정책연구	· 도민행복대학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교육정책과
	정책이슈리포트	· 작지만 강한 연결 -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인구정책과
2022	정책연구	·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 체계 연구	메타버스정책관
	정책이슈리포트	· 신산업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설립 검토	메타버스정책관

2022년 대구경북연구원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예산】

(단위 : 천원)

항 목	`23년 예산액	`22년 예산액 (당초)	비 증 감	비 고
계	12,157,175	13,299,864	-1,142,689	
경북도출연금	4,300,000	4,300,000	0	전년과 동일
대구시출연금	4,300,000	4,300,000	0	전년과 동일
사업수입	2,700,000	2,250,000	450,000	
이월금	500,000	1,300,000	-800,000	이월금 감소 예상
이자수입	250,000	105,580	144,420	금리 인상
환급금	80,000	44,284	35,716	
기타수입	27,175	1,000,000	-972,825	임차보증금 삭제

【세출총괄】

(단위 : 천원)

항 목	`23년 예산액	`22년 예산액 (당초)	비 증 감	비 고
계	12,157,175	13,299,864	-1,142,689	
인건비	7,976,402	7,694,295	282,107	•정규직 82명 규모 운영 •정규연구직2명,임시직4명신규채용 •23년 인건비 인상 추계액 포함
연구사업비	1,360,000	1,265,790	94,210	• 기본과제, 정책과제 등 : 6억원 • 연구간행물, 기관 네트워킹 : 3억원
경상경비	1,980,000	3,461,259	-1,481,259	•청사이전 후 이전경비 등 감액
포상금	180,000	180,000	0	•사업수입 연동
성과금	602,773	640,520	-37,747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예비비	58,000	58,000	0	•세출예산의 0.5% 내외

□ 현 황

- 설립 일 : 1992. 3. 9.
- 설립목적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컨설팅, 정책연구 및 임직원 교육
- 출연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 '22. 출연 : 66백만원(17개 시·도 총1,008백만원 中 6.5%)
 - 시·도 분담기준 : 재정력 지수*(50%) + 공기업 수(50%)
 - ※ 지자체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조달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 출연금 지원 사유('16년부터 지원)

- 국회 국정감사('14년) 및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방안」('15년) 추진에 따라 평가원 운영비 일부를 지자체에서 출연토록 권고
 - ※ 지방공기업 평가 내실화를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재조정 지적
- 공기업 대상 맞춤형·심층형 컨설팅 사업 수수료 무료화에 따른 수익 감소, 평가대상 기초 공기업 증가, 인력 충원 등 고려

□ 평가원 수행 사업

- 지방공기업 중장기 발전전략, 공기업 육성정책 수립 등 연구지원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실시
- 경영컨설팅을 통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개선 유도
- 지방공기업 임직원 직무수행 능력 및 경영 역량 제고 등

2022년 시도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

시도명	'21년 지방세 결산액	'21년 보통세 결산액(A)	출연금 (A×1.2/10,000)	출연금 비율
합 계	110,273,768	103,195,082	12,382	100%
서 울	26,161,333	26,161,333	3,139	25.4%
부 산	6,468,033	5,887,927	707	5.7%
대 구	4,246,517	3,884,268	466	3.8%
인 천	5,923,870	5,362,935	644	5.2%
광 주	2,392,719	2,194,371	263	2.1%
대 전	2,511,095	2,308,769	277	2.2%
울 산	2,216,059	2,003,528	240	1.9%
세 종	877,116	805,181	97	0.8%
경 기	29,731,588	27,058,807	3,247	26.2%
강 원	2,875,409	2,628,984	315	2.5%
충 북	3,149,318	2,901,481	348	2.8%
충 남	4,595,115	4,191,398	503	4.1%
전 북	3,062,710	2,837,181	340	2.7%
전 남	3,435,787	3,435,779	412	3.3%
경 북	4,898,316	4,446,337	534	4.3%
경 남	6,043,119	5,536,154	664	5.4%
제 주	1,685,664	1,550,649	186	1.5%

2022년 경상북도 시군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

시군명	'21년 지방세 결산액	'21년 보통세 결산액(A)	출연금 (A×1.2/10,000)	출연금 비율
합 계	4,898,316	4,446,337	534	100%
도분청	2,765,393	2,313,461	278	52.0%
포항시	396,804	396,795	48	9.0%
경주시	226,143	226,137	27	5.0%
김천시	103,025	103,025	12	2.2%
안동시	98,131	98,129	12	2.2%
구미시	414,734	414,721	50	9.4%
영주시	73,171	73,171	9	1.7%
영천시	89,261	89,260	11	2.1%
상주시	56,682	56,682	7	1.3%
문경시	42,273	42,273	5	0.9%
경산시	207,069	207,063	25	4.7%
군위군	19,540	19,540	2	0.4%
의성군	31,332	31,331	4	0.7%
청송군	17,348	17,348	2	0.4%
영양군	10,885	10,885	1	0.2%
영덕군	24,683	24,682	3	0.6%
청도군	30,692	30,692	4	0.7%
고령군	31,436	31,436	4	0.7%
성주군	46,771	46,768	6	1.1%
칠곡군	105,048	105,047	13	2.4%
예천군	34,666	34,666	4	0.7%
봉화군	21,752	21,752	3	0.5%
울진군	45,131	45,128	5	0.9%
울릉군	6,345	6,345	1	0.2%